

의안번호	제879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재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재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박재주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안치영, 오영탁,
조성태

1. 개정이유

- 현행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도지사”의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도지사”의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<u>도지사</u> 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도지사의 책무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